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u>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u>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OSECUTION SERVICE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이준호

전화 02-530-4780 / 팩스 02-536-5410

보도자료 2025. 4. 8.(화)

제 목

성주 사드기지 군사 작전정보 누설 사건 수사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제11조 제1항)
- ✓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 널리 알려진 경우, 관련사건을 공소제기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
- ☑ 혐의사실, 불기소이유, 제7조 각호의 공개금지정보를 제외한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및 수사의 의의 등(제10조 제2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성주 사드기지 군사 작전정보 누설 사건을 수사한 결과,
 - 서〇〇(前 국방부차관·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①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18.~'21. 국방부차관 재직 중 2회,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재직 중 6회 공무상 비밀인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정보의 누설을 지시하고, ② '18. 4. 12.경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작전을 수행 중이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하였고,
 - 정〇〇(前 국가안보실장) · 정△△(前 국방부장관)가 '20. 5. 29.경 군사 II급 비밀인 전략무기[유도탄 · 레이더 전자장치유닛(EEU)] 반입 작전정보의 누설을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어,
 - 서○○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 · 정△△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고.
 - ※ 정○○ · 정△△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은 군사법원 전속관할이므로 군검찰 이송
 - 정 ○ · 정 △ △ 의 중국 상대 작전정보 누설 및 이 ○ (前 청와대 시민 참여비서관)의 반대단체 상대 작전정보 누설 등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였음
- '국가 안보' 앞에서 불법과의 타협은 없어야 함을 확인한 사안으로,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임

사건관계인

- 서○○(前 국방부차관·국가안보실 제1차장)
- 정○○(前 국가안보실장)
- 정 △ △(前 국방부장관)
- 이○○(前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Ⅱ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서〇〇

가. 작전정보 누설

- 국방부차관 재직 시인 '18. 4.경 2회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특별 취급인 '군사 작전정보'(공사 자재 등 반입)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 주라고 지시하여 이를 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재직 시인 '20. 8.경~'21. 4.경 6회에 걸쳐 국방부지역협력반장에게 대외보안·비공개인 '군사 작전정보'(공사 자재 및사드장비 등 반입)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하여 이를 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나. 작전중단

● '18. 4. 12.경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드기지 내 공사 자재 등 반입 군사 작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육군 제50사단장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 중단을 명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 피고인 정○○ ㆍ정△△의 군사기밀 누설

● 공모하여 '20. 5. 29.경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Ⅱ급비밀인 '군사 작전정보'[유도탄 · 레이더 전자장치유닛(EEU) 교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하여 이를 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 경과 Ш

24. 11. 감사원 수사요청서 접수

①감사원, ②피고인 서〇〇·참고인 주거지 및 사무실, • '24. 12.~'25. 3.

③대통령기록관 등 압수수색

사건관계인 조사 • '24. 12.~'25. 4.

서○○·정○○·정△△ 각 불구속 기소 / 정○○· • '25. 4. 8. 정△△의 일부 혐의 및 이○○ 각 불기소(혐의없음)

※ '군사 Ⅱ급비밀' 관련 정○○, 정△△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부분은 군사법원 전속 관할 범죄이므로 군검찰 이송

Ⅳ 수사 결과

- 사드 반대단체는 6개 주요 단체가 통합된 조직
 - 반대단체 상황실장 등 주요 관계자는 반미, 자주통일 등을 기치로 활동 중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회원이며, 반대단체가 제공한 사드 관련 정보는 평통사에 공유되어 심층분석 보고서로 제작
 - 6개 단체 중 일부 단체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등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이적단체 포함
 - ※ 일명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19~'24. 반대단체 SNS에 반미 성격의 게시물을 지속 게시해온 것으로 확인
-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 작전정보(일시·반입 물자 등) 누설로 인한 폐해
 - 반대단체는 군사 작전정보 입수 후 외부 전문시위대를 동원, 트럭· 농기계 등으로 유일한 진입로를 선점한 후, 몸에 체인을 감고 자물쇠를 이용해 트럭에 몸을 묶거나, 쇠사슬로 묶은 알루미늄 사다리 격자 구조물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군사 작전을 조직적으로 방해



작전정보 사전통보

- 작전 일에 집회 참가 인원이 최대 4배 증가하고, 작전 수행에 동원된 경찰력역시 최대 49배 증가되는 등 군사 작전에 차질이 발생하고, 공권력의심각한 낭비를 초래



- 특히, 반대단체는 작전 직후 최소 8일~최대 23일간 기지 내 식당 근로자, 인분·쓰레기 등 수거차량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전면 차단
- ※ ▲인분, 일반 · 음식물 쓰레기도 반출 못함, ▲식자재 · 부식 등 공중수송으로 급식량 부족,
 ▲유일한 진입로 통제로 장병 등은 급경사인 산길을 이용,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은 반대단체가 지상수송 작전에 항의하며 지역협력반 숙소 입구를 차단하여 무릎 꿇고 사과
 □국은 지상접근권 뿐만 아니라 장병 인권문제로도 수차례 항의
- 반대단체의 구성·성향·불법행위 등을 인지하면서도 작전정보 지속 누설
 - 국방부·국가안보실은 「'반미',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외부 세력이 반대단체를 주도하고 있고, 이들은 '기본적 인식의 프레임이 달라 대화와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였고, 피고인들도 보고받아 이를 인식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반대단체에 군사 작전정보를 누설하였고, **피고인 서**〇〇은 반대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칙적 법집행' 건의조차 차단
 - ※ 피고인 서○○ 등은 반대단체의 반대를 명분으로 중국 측에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상당 기간 평가 협의회 구성 단계에서 절차 중단
- '국가안보' 앞에서 불법과의 타협은 허용될 수 없음
 -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국가안보와 관련하여서는, '갈등 상황관리' 라는 미명 아래 군사 작전정보를 반대단체에 누설하는 불법행위까지 용인될 수는 없음을 명백히 확인

Ⅴ 불기소 처분

- 감사원 수사요청 사항 중 일부 혐의는 불기소 처분
 - 감사원이 수사요청한 사항 중 아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 정○○ㆍ정△△의 중국 국방무관 상대 작전정보 누설 혐의
- '16. 사드배치 협의 단계에서부터 '20. 5. 사드 노후장비 교체에 이르기 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의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조치사항,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군사외교상 필요에 의한 설명을 넘어 군사기밀 누설로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 이○○의 반대단체 상대 사드기지 사진·작전정보 누설 혐의
 - 제공된 사진은 사드 기지 내 폐자재 야적 사진, 쓰레기 사진 등으로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고, 기지의 열악한 환경 설명 목적에서 이루 어진 행위이며,
 - 반대단체에 제공된 정보의 내용에 비추어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려워 각 혐의없음

향후 계획

●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임 ∅